< 정 오 표 >

1. 정정대상 투자신탁 : 유리글로벌거래소증권자투자신탁제1호[주식]

2. 효력발생예정일(변경시행일): 2019.05.10

3. 주요 정정사항:

-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결산 갱신

- 법 개정사항 반영

[규약]

제15조(자산 변영 개정사항 전염하는 전함 전함 기 제1학에 대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・서분 등을 한 경 우 교투자산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받는 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 및 전함을 받답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기 학에 '작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기 학에 '작한다. 나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기 학에 '작한다. 나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기 학에 '작한 관해방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'대정 2019. 05. 10>- (3 ~ ④ (생략)	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전 정 후			
### ### #############################	제15조(자산	법 개정사항	① (생략)	① (현행 유지)			
지 17조(투자 안 하 이 나이 한	운용지시 등)	반영	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	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			
			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・처분 등을 한 경	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・처분 등을 한 경			
대			우 <u>그 투자신탁재산으로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	우 <u>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</u> 그 이행			
유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9. 05. 10- 10- 10- 10- 10- 10- 10- 10- 10- 10-			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	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			
10			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	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			
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			러하지 아니하다.	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u><개정 2019. 05.</u>			
제17조(투자 단상자산 등) 반영				<u>10></u>			
대상자산 등			③ ~ ④ (생략)	③ ~ ④ (현행 유지)			
지 제42조(기타 운용비용 등)	제17조(투자	법 개정사항	① (생략)	① (현행 유지)			
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급전의 대여를 말한다 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급전의 대여를 말한다 2 ~ 4. (생략) 2 ~ 4. (현행 유지) 2 ~ 4. (한행 유지) 3 ~ 4. (한화 유지)	대상자산 등)	반영	② 제1항의 운용할 수 있다.	② 제1항의 운용할 수 있다.			
대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			1. 단기대출(<u>법 시행령 제83조제3항의</u> 금융	1. 단기대출(<u>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의</u> 금융			
지42조(기타 운용비용 등) 본사조항 1 (생략) 1 (현행 유지) 2 ~ 4. (현행 유지) 2 ~ 4. (현행 유지) 2 1. ~ 5. (현행 유지) 2 1. ~ 5. (현행 유지) 6.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6.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. ~ 10. (생략) 5. ~ 10. (생략) 7. ~ 10. (생략) 7. ~ 10. (생략) 7. ~ 10. (현행 유지) 7. ~ 10. (현행 유지) 7. ~ 10. (현행 유지) 9. ~ 4. (한행 유지) 9.			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	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			
제42조(기타 윤용비용 등)			말한다)	말한다) <u><개정 2019.05.10></u>			
유용비용 등) 추가			2 ~ 4. (생략)	2 ~ 4.(현행 유지)			
6.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. ~ 10. (생략)	제42조(기타	단서조항	① (생략)	① (현행 유지)			
지 10. (생략)	운용비용 등)	추가	② 1. ~ 5. (생략)	② 1. ~ 5. (현행 유지)			
1			6.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	6.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(단, 집합			
지45조(투자 번 개정사항 인생략) 기(현행 유지) 기(한행 유지) 기(한해 유지) 기(한행 유지)			7. ~ 10. (생략)	<u>투자업자의 귀책사항인 경우 제외) <개정</u>			
3 ~ 4 (생략) 3 ~ 4 (현행 유지) 1 (생략) 1 (생략) 1 (현행 유지) 1 (현행 유지) 1 (현행 유지) 1 (현행 유지) 1 (한행 유지) 2 1. ~ 4. (생략) 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				<u>2019. 05. 10></u>			
제45조(투자 법 개정사항 신탁의 해지) 반영 2 1. ~ 4. (생략) 2 1. ~ 4. (생략) 2 1. ~ 4. (생략) 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<u>다만, 건전한</u>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 그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<u>(개정 2019.05.10)</u> 3 ~ ④ (생략) 3 ~ ④ (현행 유지)				7. ~ 10.(현행 유지)			
신탁의 해지)반영② 1. ~ 4. (생략)② 1. ~ 4. (현행 유지)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.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. <개정 2019. 05. 10> 			③ ~ ④ (생략)	③ ~ ④ (현행 유지)			
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<u>다만, 건전한</u>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<u>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</u> 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 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<u>1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u> 3 ~ ④ (생략) 3 ~ ④ (현행 유지)	제45조(투자	법 개정사항	① (생략)	① (현행 유지)			
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<개정 2019. 05. 10> ③ ~ ④ (생략) ③ ~ ④ (현행 유지)	신탁의 해지)	반영					
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 있한다. 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 있한다. 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 있한다. 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 있한다. 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 있한다. 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 있한다. 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 있한다.							
우는 제외한다.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<개정 2019.05.10> ③ ~ ④ (생략) ③ ~ ④ (현행 유지)							
의한다. < 개정 2019. 05. 10> ③ ~ ④ (생략) ③ ~ ④ (현행 유지)							
③ ~ ④ (생략) ③ ~ ④ (현행 유지)			ㅜ는 세되인다.				
			③ ~ ④ (생략)				
세49소(금선 밉 개성사항 ① 1. ~ 2.(생략) ① 1. ~ 2.(현행 유지)	제49조(금전	법 개정사항	① 1. ~ 2. (생략)	① 1. ~ 2. (현행 유지)			



차입 등의	반영	3. <신설>	3.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
제한)			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
- ''I' ''_'			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
			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
			하는 때 <개정 2019. 05. 10>
		 ②~⑤ (생략)	②~⑤ (현행 유지)
제50조(공시	법 개정사항	① ~ ⑥ (생략)	① ~ ⑥ (현행 유지)
및 보고서	변영 반영	ⓒ	③
등)		ⓒ "'ⓒ X "'ⓒ H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	○
		" "	" " ' ' ' ' ' ' ' ' ' ' ' ' ' ' ' ' '
		전	C C
		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자산운용보고서를	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
		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다만,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수익
		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	···· ·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
		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	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
		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	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
		 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	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
		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,	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
		자산보관・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수익	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, 자산보관·관리보고
		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	서를 교부하는 경우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
		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	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
		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	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
		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	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
		야 한다.	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2019.
			05. 10>
		⑧ ~ ⑩ (생략)	⑧ ~ ⑩ (현행 유지)
제52조(수익	약관 명칭	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"수익증	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<u>"수익증</u>
증권의 통장	변경	권통장거래약관"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	권저축약관"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
거래)		있다.	다. <개정 2019. 05. 10>
부칙	-	-	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9년 5월
			10일부터 시행한다.
집합투자	대표이사	서울특별 <u>서</u>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7	서울특별 <u>시</u>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7
업자	변경	유리자산운용 주식회사	유리자산운용 주식회사
		대표이사 박 현 철 (인)	대표이사 조 우 철 (인)

[일괄신고서/투자설명서]

		•	•					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					
요약정보	요약정보							
표. 집합투자기	기구의 투자정보							
[1] 투자전략								
4. 운용전문	결산 갱신	-	기준일자로 업데이트					
인력								
5. 투자실적	결산 갱신	-	기준일자로 업데이트					
추이(연도별								
수익률(세전								



기준))							
[2] 주요 투자	위험 및 위험관	리					
2. 투자위험	위험 등급	-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(최근 결	-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(최근 결				
등급 분류	기준 변경	산일 기준)한 투자신탁으로 최근 결산일 기준	산일 기준)한 투자신탁으로 최근 결산일 기준				
		이전 3년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	이전 3년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				
		준편차가 12.36% 수준이므로 유리자산운용㈜	준편차가 10.78% 수준이므로 유리자산운용㈜				
		은 실제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	은 실제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				
		탁을 6등급 중 위험이 다소 높은 수준인 3등	탁을 6등급 중 위험이 다소 높은 수준인 3등				
		급 (다소 높은 위험)으로 분류합니다.	급 (다소 높은 위험)으로 분류합니다.				
제2부. 집합투	자기구에 관한	사항					
2. 집합투자	변경에 따른	-	2019.05.10				
기구의 연혁	연혁 추가		-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결산 갱신				
			- 법 개정사항 반영				
5. 운용전문	결산 갱신	-	기준일자로 업데이트				
인력							
10. 집합투자	위험 등급	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			
기구의 투자	기준 변경	-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(최근 결	-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(최근 결				
위험		산일 기준)한 투자신탁으로 최근 결산일 기준	산일 기준)한 투자신탁으로 최근 결산일 기준				
		이전 3년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	이전 3년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				
		<u>준편차가 12.36% 수준이므로 유리자산운용㈜</u>	<u>준편차가 10.78% 수준이므로 유리자산운용</u> 祭				
		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이 투자	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이 투기				
		신탁을 6등급 중 위험이 다소 높은 수준인 3	신탁을 6등급 중 위험이 다소 높은 수준인 3				
		등급 (다소 높은 위험)으로 분류합니다. 추후	등급 (다소 높은 위험)으로 분류합니다. 추후				
		<u>매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</u>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	매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				
13. 보수 및	결산 갱신	<u> 경우 구자취임등합이 연중될 구 있답니다.</u>	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 기준일자로 업데이트				
수수료에 관		-	기판글시도 납테이트 				
한 사항	및 가입자격						
	추가						
		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					
1. 재무정보	결산 갱신	-	기준일자로 업데이트 				
2. 연도별 설	결산 갱신	-	기준일자로 업데이트				
정 및 환매							
현황							
3. 집합투자	결산 갱신	-	기준일자로 업데이트				
기구의 운용							
실적							
제4부. 집합투	자기구 관련회시	ት에 관한 사항					
1. 집합투자	최근일자 업	가. 회사개요	가. 회사개요				
업자에 관한	데이트	 유리자산운용주식회사	 유리자산운용주식회사				
사항		·····	·····				
		조합 0.92% / 기타 0.03%	조합 0.1%				
		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	최근일자로 업데이트				
		라. 운용자산규모	최근일자로 업데이트				
제5부. 집합투	자기구 관련회시	l에 관한 사항					
2. 집합투자	법 개정사항	가. 의무 해지	가. 의무 해지				



유리자산운용

기구의 해지	반영	-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<u>다만, 건</u>	-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<u>다만, 법</u>
에 관한 사		<u>전한</u>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	<u>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</u> 거래
항		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	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
		외합니다.	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
			다.
3. 집합투자	법 개정사항	가. 정기보고서	가. 정기보고서
기구의 공시	반영	(2) 자산운용보고서	(2) 자산운용보고서
에 관한 사		① 집합투자업자는 교부하여야 합니다.	① 집합투자업자는 교부하여야 합니다.
항 		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	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
		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	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
		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	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
		<u>직접 또는 전자우편의</u> 방법으로 교부하여야	<u>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</u>
		합니다. 다만, 수익자가 따라야 합니다.	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수익자가
			따라야 합니다.
		(3) 자산보관・관리보고서	(3) 자산보관・관리보고서
		신탁업자는 합니다. 집합투자업자는 수익	신탁업자는 합니다. 집합투자업자는 수익
		자에게 자산보관・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	자에게 자산보관・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
		우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	우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
		예탁결제원을 통하여 <u>직접 또는 전자우편의</u>	예탁결제원을 통하여 <u>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</u>
		방법으로 교부하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	<u>와 비슷한 전자통신의</u> 방법으로 교부하되 수
		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	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
		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	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
		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	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
		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 다만 있	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
		습니다.	라야 합니다. 다만 있습니다.
4. 이해관계	자구 수정	다.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	다.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
인 등과의		(마) 약정배분기준	(마) 약정배분기준
거래에 관한		- 운용부서는 매 분기 마다 제4조에 의하여	- 운용부서는 매 분기 마다 (마) 약정배분기
사항		중개사순위를 결정하고 "중개회사별 매매주문	준에 의하여 중개사순위를 결정하고 "중개회
		계획서"를 작성하여 매 분기 말일까지 준법감	사별 매매주문계획서"를 작성하여 매 분기 말
		<u>시인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</u>	일까지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		- 다음 분기의 약정배분은 제3항의 계획된	다음 분기의 약정배분은 계획된 중개사순위
		중개사순위에 따라 매매를 위탁하여야 합니	에 따라 매매를 위탁하여야 합니다.
		다.	

[간이투자설명서]

항	목	정정사유		정	정	전			정	정	후	
요약정보	요약정보											
п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											
[1] 투자	[1] 투자전략											



유리자산운용

4. 운용전문	결산 갱신	-	기준일자로 업데이트
인력			
5. 투자실적	결산 갱신	-	기준일자로 업데이트
추이(연도별			
수익률(세전			
기준))			
[2] 주요 투자	위험 및 위험관	리	
2. 투자위험	위험 등급	-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(최근 결	-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(최근 결
등급 분류	기준 변경	산일 기준)한 투자신탁으로 최근 결산일 기준	산일 기준)한 투자신탁으로 최근 결산일 기준
		이전 3년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	이전 3년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
		<u>준편차가 12.36% 수준이므로 유리자산운용㈜</u>	준편차가 10.78% 수준이므로 유리자산운용㈜
		은 실제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	은 실제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
		탁을 6등급 중 위험이 다소 높은 수준인 3등	<u>탁을 6등급 중 위험이 다소 높은 수준인 3등</u>
		급 (다소 높은 위험)으로 분류합니다.	급 (다소 높은 위험)으로 분류합니다.

<끝>.